

## 202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

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# 목 차

I. 전형일정 .....	1
II. 모집인원 .....	2
1. 모집인원 .....	2
2. 전형별 모집인원 .....	2
3.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.....	3
III. 수시모집 .....	5
1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.....	5
2. 학생부교과(일반학생 전형) .....	5
3. 학생부교과(대학독자 전형) .....	6
4. 학생부교과(기회균형 전형) .....	8
5. 학생부교과(다자녀가정 전형) .....	9
6.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 전형) .....	10
7. 학생부교과(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전형) .....	11
IV. 정시모집(“가”군) .....	13
1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.....	13
2. 수능위주(일반학생 전형) .....	13
3. 수능위주(다자녀가정 전형) .....	14
4. 수능위주(농어촌학생 전형) .....	15
5. 수능위주(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전형) .....	16
V. 전형방법 .....	18
1. 선발기준 및 방법 .....	18
2. 전형별 성적반영 방법 및 비율 .....	18
3.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.....	19
4.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.....	22
5.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.....	23
VI. 순수외국인 전형 .....	24

# I 전형일정

구 분		일 자
수능시험		2027. 11. 18(목)
수능성적통지		2027. 12. 10(금)
수시 모집	학생부 작성 기준일	2027. 08. 31(화)
	원서접수	2027. 09. 20(월) ~ 09. 23(목) 중 3일 이상
	전형기간	2027. 09. 24(금) ~ 12. 20(월)(88일)
	합격자 발표	2027. 12. 21(화) 까지
	합격자 등록	2027. 12. 22(수) ~ 12. 24(금)(3일)
	미등록충원 합격 통보	2027. 12. 26(일) ~ 12. 30(목)(마감일 18시까지)
	미등록충원 등록 마감	2027. 12. 31(금) 18시 까지
정시 모집 (“가”군)	학생부 작성 기준일	2027. 11. 30(화)
	원서접수	2028. 01. 03(월) ~ 01. 06(목) 3일 이상
	전형기간	2028. 01. 10(월) ~ 01. 17(월)(8일)
	합격자 발표	2028. 02. 10(목)까지
	합격자 등록	2028. 02. 11(금) ~ 02. 14(월) (4일)
	미등록충원 합격 통보	2028. 02. 15(화) ~ 02. 20(일)(마감일 18시까지)
	미등록충원 등록 마감	2028. 02. 21(월) 18시 까지

※ 전형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‘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’에 따름

II

**모집인원**

**1 모집인원**

■ **모집인원** : 425명 [정원 내 모집 370명, 정원 외 모집 55명]

- 수시모집 : 정원 내 모집 306명, 82.7% (정원 내·외 모집 포함 : 361명, 84.9%)
- 정시모집 : 정원 내 모집 64명, 17.3% (정원 내·외 모집 포함 : 64명, 15.1%)

**2 전형별 모집인원**

모집시기	전형유형	전형명	모집인원	비고
수시 모집	학생부교과	일반학생	269	정원내
	학생부교과	대학독자	13	정원내
	학생부교과	기회균형	24	정원내
	학생부교과	다자녀가정	36	정원외
	학생부교과	농어촌학생	7	정원외
	학생부교과	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12	정원외
	<b>소 계</b>			<b>361</b>
정시 모집 (“가”군)	수능위주	일반학생	64	정원내
	수능위주	다자녀가정	수시모집 이월인원	정원외
	수능위주	농어촌학생	수시모집 이월인원	정원외
	수능위주	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수시모집 이월인원	정원외
	<b>소 계</b>			<b>64</b>
<b>합 계</b>			<b>425</b>	

### 3 모집시기별 모집인원

#### 가. 수시모집

계열	모 집 단 위	전 공	입 학 정 원	정 원 내 모 집				정 원 외 모 집		
				일반 전형 일반 학생	특별전형		계	특별전형		
					대학 독자	기회 균형		다자녀 가정	농어촌 학생	기초생활 및 차상위
인문사회	경찰학부	경찰행정학전공 경호학전공	30	22	0	2	24	3	모 집 단 위 별 입 학 정 원 의 10% 이 내	모 집 단 위 별 입 학 정 원 의 20% 이 내
인문사회	복지상담학부	상담복지학전공 언어치료학전공 아동학전공 한국어학전공	50	34	3	3	40	5		
인문사회	융합경영학부	호텔관광경영학전공 항공경영학전공 창업경영학전공	50	35	2	3	40	5		
공학	안전공학부	소방방재학전공 정보보안공학전공	40	26	3	3	32	4		
공학	건설공학부	건축학전공 토목공학전공	35	24	2	2	28	3		
공학	건설공학부(야)	건축학전공(야) 토목공학전공(야)	15	10	0	2	12	1		
공학	에너지기계공학부	전기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전공	40	26	3	3	32	4		
예체능	체육학부	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재활학전공 태권도학전공	60	51	0	3	54	6		
예체능	체육학부(야)	레저스포츠학전공(야) 스포츠재활학전공(야) 태권도학전공(야)	20	17	0	1	18	2		
예체능	예술학부	공연예술학전공 뷰티케어학전공	30	24	0	2	26	3		
합 계			370	269	13	24	306	36	7	12

※ 2028학년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나. 정시모집(“가”군)**

계열	모집단위	전공	입학정원	정원내 모집		정원의 모집		
				일반전형		특별전형		
				일반학생		다자녀가정	농어촌학생	기초생활 및 차상위
인문사회	경찰학부	경찰행정학전공 경호학전공	30	6		수시모집 이월인원		
인문사회	복지상담학부	상담복지학전공 언어치료학전공 아동학전공 한국어학전공	50	10		수시모집 이월인원		
인문사회	융합경영학부	호텔관광경영학전공 항공경영학전공 창업경영학전공	50	10		수시모집 이월인원		
공학	안전공학부	소방방재학전공 정보보안공학전공	40	8		수시모집 이월인원		
공학	건설공학부	건축학전공 토목공학전공	35	7		수시모집 이월인원	수시모집 이월인원	수시모집 이월인원
공학	건설공학부(야)	건축학전공(야) 토목공학전공(야)	15	3		수시모집 이월인원		
공학	에너지기계공학부	전기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전공	40	8		수시모집 이월인원		
예체능	체육학부	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재활학전공 태권도학전공	60	6		수시모집 이월인원		
예체능	체육학부(야)	레저스포츠학전공(야) 스포츠재활학전공(야) 태권도학전공(야)	20	2		수시모집 이월인원		
예체능	예술학부	공연예술학전공 뷰티케어학전공	30	4		수시모집 이월인원		
<b>합 계</b>			<b>370</b>	<b>64</b>		수시모집 이월인원	수시모집 이월인원	수시모집 이월인원

※ 2028학년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수시모집 미 충원 인원은 정시모집(“가”군)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(추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예정)

III

수시모집

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

전형유형	전형명	실질 반영 비율		최고점/최저점			비고
		학생부		반영 요소	최고점	최저점	
		교과	비교과				
학생부교과	일반학생	90%	출석 10%	학생부	교과	900	738
					비교과(출석)	100	82
학생부교과	대학독자	90%	출석 10%	학생부	교과	900	738
					비교과(출석)	100	82
학생부교과	기회균형	90%	출석 10%	학생부	교과	900	738
					비교과(출석)	100	82
학생부교과	다자녀가정	90%	출석 10%	학생부	교과	900	738
					비교과(출석)	100	82
학생부교과	농어촌학생	90%	출석 10%	학생부	교과	900	738
					비교과(출석)	100	82
학생부교과	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	90%	출석 10%	학생부	교과	900	738
					비교과(출석)	100	82

2 학생부교과(일반학생 전형)

가. 지원자격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나. 전형요소별 배점

선발방법	총점	전형요소별 배점
일괄합산	1,000점	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(이하 “학생부”) 1,000점

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

## 라. 제출서류

대 상 자	제 출 서 류
지원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부 성적 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검정고시출신자 :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

## 3 학생부교과(대학독자 전형)

### 가. 지원자격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아래 ① ~ ⑪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.

- ①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자
  - 품행이 단정하고 지원 학과의 적성과 소질이 부합되는 자
- ② 자격증 소지자
  -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취득자
- ③ 특성화 고교 출신자
  - 일반계 고교 및 종합계 고교 등에서 특성화 학과 출신자도 인정
- ④ 학생임원 활동 역임자
  - 고등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 임원(부장 이상), 학급 반장을 1개 학기 이상 역임한자
- ⑤ 검정고시 합격자
- ⑥ 산업체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
- ⑦ 대학(교) 1년 과정 이상 이수자
- ⑧ 영농·어업 종사자 또는 그 자녀
- ⑨ 해녀 또는 그의 자녀
- ⑩ 4·3사건 유가족
- ⑪ 직업군인 자녀

**나. 전형요소별 배점**

선발방법	총 점	전형요소별 배점	비 고
일괄합산	1,000점	학생부 1,000점	

**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**

**라. 제출서류**

대 상 자	제 출 서 류
○ 지원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검정고시출신자 :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
①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자	○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서 1부
② 자격증 소지자	○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 증명서(해당기관 발행) 1부
③ 특성화 고교 출신자	○ 출신학과가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
④ 학생임원 활동 역임자	○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임원활동역임서 1부
⑤ 검정고시 출신자	○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⑥ 산업체 근무자	○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⑦ 대학(교) 1년 과정 이상 이수자	○ 재학(수료)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1부
⑧ 영농·어업 종사자 또는 그의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농·어업 종사자 확인서</li> <li>○ 가족관계증명서</li> </ul>
⑨ 해녀 또는 그 자녀	○ 해녀 조업 증명서 1부
⑩ 43사건 유가족	○ 제주 43사건 유족결정 확인서 1부
⑪ 직업군인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복무확인서 1부</li> <li>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</li> </ul>

### 3 학생부교과(기회균형 전형)

#### 가. 지원자격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아래 ① ~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.

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 및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② 만학도

- 만 30세 이상인 자 (2026년 3월 1일 기준)

③ 국가보훈대상자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‘국가보훈대상자’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
④ 북한이탈주민

- 「북한이탈주민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#### 나. 전형요소별 배점

선발방법	총 점	전형요소별 배점	비 고
일괄합산	1,000점	학생부 1,000점	

#### 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

#### 라. 제출서류

대상자	제 출 서 류	발급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자 전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검정고시출신자 :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	

대상자		제 출 서 류	발급기관
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	◦ 지원자 전원	◦ 가족관계증명서 (부 또는 모 기준) 1부 ◦ 주민등록등본 1부 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	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시
	◦ 기초생활수급권자	◦ 기초수급권자 증명서(본인 명의) 1부	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	◦ 차상위계층		
	- 장애수당 대상자	◦ 장애(아동)수당대상자확인서 1부	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	- 장애연금부가급여대상자	◦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1부	
	- 자활급여대상자	◦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	국민건강보험공단
	- 본인부담경감대상자	◦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	
- 차상위계층대상자	◦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	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	
◦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	◦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		
② 만학도		◦ 주민등록등본	
③ 국가보훈대상자		◦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	보훈(지)청장
④ 북한이탈주민		◦ 학력인정증명서	거주 지역 시도교육청
		◦ 학력확인서	거주 지역 시·군·구청 발급
		◦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
		◦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	거주 지역 주민센터 발급

## 5 학생부교과(다자녀가정 전형)

### 가. 지원자격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(형제 및 자매가 2인 이상) 구성원으로 부모 및 다자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

### 나. 전형요소별 배점

선발방법	총 점	전형요소별 배점	비 고
일괄합산	1,000점	학생부 1,000점	

**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**

**라. 제출서류**

대 상 자	제 출 서 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자 전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검정고시출신자 :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</li> <li>○ 주민등록등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/ul> </li> </ul>

**6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 전형)**

**가. 지원자격**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로서 다음 아래 ① ~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※ 읍·면 소재 특수목적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고, 체육고) 출신자 및 대학 입학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하며,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

①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

- ※ 중·고교 6년간 농어촌지역에서 교육과정 이수자(본인, 부모 거주자) 중 부모가 사망, 이혼 또는 실종한 경우
-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, 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
  -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 부 또는 모와 읍·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
  -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
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 소재지 초·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(본인과 부모의 거주기간은 적용하지 않음)

## 나. 전형요소별 배점

선발방법	총 점	전형요소별 배점	비 고
일괄합산	1,000점	학생부 1,000점	

## 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

## 라. 제출서류

대 상 자	제 출 서 류
○ 지원자격 ① 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농·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</li> <li>○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</li> <li>○ 부, 모, 지원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</li> <li>※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</li> <li>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/ul>
○ 지원자격 ② 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농·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</li> <li>○ 초등학교 및 중학교,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</li> <li>○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</li> <li>※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</li> <li>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/ul>
○ 부모의 이혼, 사망,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원자격 소명이 필요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가 증빙 서류 각 1부</li> <li>※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기본증명서,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등</li> <li>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/ul>

## 7 학생부교과(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전형)

### 가. 지원자격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,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**나. 전형요소별 배점**

선발방법	총 점	전형요소별 배점	비 고
일괄합산	1,000점	학생부 1,000점	

**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**

**라. 제출서류**

대상자	제 출 서 류	발급기관
◦ 지원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입학원서 1부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◦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◦ 검정고시출신자 :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</li> <li>◦ 가족관계증명서 (부 또는 모 기준) 1부</li> <li>◦ 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/ul>	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시
◦ 기초생활수급권자	◦ 기초수급권자 증명서(본인 명의) 1부	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◦ 차상위계층		
- 장애수당 대상자	◦ 장애(아동)수당대상자확인서 1부	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장애연금부가급여대상자	◦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1부	
- 자활급여대상자	◦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	
- 본인부담경감대상자	◦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	국민건강보험공단
- 차상위계층대상자	◦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	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◦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	◦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	

## IV 정시모집(“가”군)

### 1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및 배점

전형 유형	전형명	실질 반영 비율			최고점/최저점			비고
		학생부		수능	반영 요소	최고점	최저점	
		교과	비교과					
수능 위주	일반학생	13%	출석 1%	86%	학생부	교과	405	324
					학생부	비교과(출석)	45	36
					수능	수능	550	0
수능 위주	다자녀가정	13%	출석 1%	86%	학생부	교과	405	324
					학생부	비교과(출석)	45	36
					수능	수능	550	0
수능 위주	농어촌학생	13%	출석 1%	86%	학생부	교과	405	324
					학생부	비교과(출석)	45	36
					수능	수능	550	0
수능 위주	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	13%	출석 1%	86%	학생부	교과	405	324
					학생부	비교과(출석)	45	36
					수능	수능	550	0

### 2 수능위주(일반학생 전형)

#### 가. 지원자격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#### 나. 전형요소별 배점

선발방법	총 점	전형요소별 배점	비 고
일괄합산	1,000점	대학수학능력시험(이하 “수능”) 550점 + 학생부 450점	

**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**

- 수능 반영영역 : 국어 30%, 수학 30%, 영어 30%, 탐구영역(사회,과학,직업) 10%
  - 한국사 성적(등급)별 가산점 부여
-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

**라. 제출서류**

대 상 자	제 출 서 류
○ 지원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부성적 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검정고시출신자 :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

**3 수능위주(다자녀가정 전형)**

**가. 지원자격**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(형제 및 자매가 2인 이상)으로 부모 및 다자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

**나. 전형요소별 배점**

선발방법	총 점	전형요소별 배점	비 고
일괄합산	1,000점	수능 550점 + 학생부 450점	

**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**

- 수능 반영영역 : 국어 30%, 수학 30%, 영어 30%, 탐구영역(사회,과학,직업) 10%
  - 한국사 성적(등급)별 가산점 부여
-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

**라. 제출서류**

대 상 자	제 출 서 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자 전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부성적 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검정고시출신자 :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</li> <li>○ 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/ul>

**4 수능위주(농어촌학생 전형)**

**가. 지원자격**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로서 다음 아래 ① ~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※ 읍·면 소재 특수목적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고, 체육고) 출신자 및 대학 입학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하며,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

①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

※ 중·고교 6년간 농어촌지역에서 교육과정 이수자(본인, 부모 거주자) 중 부모가 사망, 이혼 또는 실종한 경우

-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, 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

-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 부 또는 모와 읍·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

-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 소재지 초·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(본인과 부모의 거주기간은 적용하지 않음)

**나. 전형요소별 배점**

선발방법	총 점	전형요소별 배점	비 고
일괄합산	1,000점	수능 550점 + 학생부 450점	

**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**

- 수능 반영영역 : 국어 30%, 수학 30%, 영어 30%, 탐구영역(사회,과학,직업) 10%
  - 한국사 성적(등급)별 가산점 부여
-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

**라. 제출서류**

대 상 자	제 출 서 류
○ 지원자격 ① 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농·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</li> <li>○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</li> <li>○ 부, 모, 지원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</li> <li>※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</li> <li>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/ul>
○ 지원자격 ② 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농·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</li> <li>○ 초등학교 및 중학교,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</li> <li>○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</li> <li>※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</li> <li>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/ul>
○ 부모의 이혼, 사망,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원자격 소명이 필요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가 증빙 서류 각 1부</li> <li>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li>※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기본증명서,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경 이력 포함) 등</li> </ul>

**5 수능위주(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전형)**

**가. 지원자격**

고등학교 졸업자(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,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**나. 전형요소별 배점**

선발방법	총 점	전형요소별 배점	비 고
일괄합산	1,000점	수능 550점 + 학생부 450점	

**다.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**

- 수능 반영영역 : 국어 30%, 수학 30%, 영어 30%, 탐구영역(사회,과학,직업) 10%
  - 한국사 성적(등급)별 가산점 부여
- 최저학력 기준 : 미적용

**라. 제출서류**

대상자	제 출 서 류	발급기관
○ 지원자 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학원서 1부 &lt;대학 소정양식&gt;</li> <li>○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검정고시출신자 :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</li> </ul>	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시
○ 기초생활수급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족관계증명서 (부 또는 모 기준) 1부</li> <li>○ 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※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</li> </ul>	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차상위계층		
- 장애수당 대상자	○ 장애(아동)수당대상자확인서 1부	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장애연금부가급여대상자	○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1부	
- 자활급여대상자	○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	
- 본인부담경감대상자	○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	국민건강보험공단
- 차상위계층대상자	○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	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	○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	

V

전형 방법

1 선발기준 및 방법

- 가.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별로 총점 성적 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의 100%를 합격자로 선발함
- 나. 예비 후보자는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 부터 성적순에 따라 지원자 모두(불합격자 제외)를 선발하며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에 합격자를 선발함
- 다. 장애 학생 지원자도 일반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학 전형에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선발함
- 라. 동점자 선발 기준

수시모집	정시모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순위 : 3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</li> <li>○ 2순위 : 2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</li> <li>○ 3순위 : 1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순위 :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상위자</li> <li>○ 2순위 : 3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</li> <li>○ 3순위 : 2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</li> </ul>

2 전형별 성적반영 방법 및 비율

모집시기	전형유형	전형명	사정단계	전형요소별 반영점수(실질반영비율)			
				수학능력	학생부(교과)	학생부(출석)	합계
수시모집	학생부교과	일반학생	일괄	-	900점 (90%)	100점 (10%)	1,000점 (100%)
		대학독자	일괄	-	900점 (90%)	100점 (10%)	1,000점 (100%)
		기회균형	일괄	-	900점 (90%)	100점 (10%)	1,000점 (100%)
		다자녀가정	일괄	-	900점 (90%)	100점 (10%)	1,000점 (100%)
		농어촌학생	일괄	-	900점 (90%)	100점 (10%)	1,000점 (100%)
		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	일괄	-	900점 (90%)	100점 (10%)	1,000점 (100%)
정시모집 ("가"군)	수능위주	일반학생	일괄	550점 (86%)	405점 (13%)	45점 (1%)	1,000점 (100%)
		다자녀가정	일괄	550점 (86%)	405점 (13%)	45점 (1%)	1,000점 (100%)
		농어촌학생	일괄	550점 (86%)	405점 (13%)	45점 (1%)	1,000점 (100%)
		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	일괄	550점 (86%)	405점 (13%)	45점 (1%)	1,000점 (100%)

###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

#### 가. 반영비율

전형명	모집단위	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			요소별 반영비율	
		1학년	2학년	3학년	교과성적	출석성적
모든 전형	전체 학과	20%	40%	40%	90%	10%

#### 나. 반영교과 및 점수산출 활용지표

전형명	모집단위	반영교과목	점수산출 활용지표	비고
모든 전형	전체 학과	전 교과목	석차등급	

※ “이수”, “미이수”, “.” 등으로 석차등급 미 표기 교과목은 반영하지 않음

#### 다. 성적 반영방법

##### 1) 2008년 2월 이후 졸업(예정)자

##### ◦ 교과성적 산출방법

- 과목별 석차등급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준표의 과목별 반영점수를 산출함
- 산출된 과목별 반영점수에 과목별 이수단위를 곱하여 과목별 가중점수를 산출함
- 산출된 과목별 가중점수를 학기별로 합산하여 학기별 이수단위의 합으로 나누고 학년별 반영비율(1학년 20%, 2학년 40%, 3학년 40%) 1/2로 곱하여 학기별 교과점수를 산출함
- 산출된 학기별 교과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교과성적 총점을 산출함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)
- 석차등급 대신 성취평가제 평가방식(A, B, C, D, E)에 따라 표시된 교과목은 아래의 평정표에 의거 등급을 산출함

성 적	A	B	C	D	E
환산등급	1	2	3	4	5

- 예술/체육/진로교과 등 과목별 등급이 3등급(우수/보통/미흡 또는 A/B/C)으로 평가된 경우 아래의 평정표에 의거 등급을 산출함

성 적	우수 또는 A	보통 또는 B	미흡 또는 C
환산등급	2	3	5

◦ **출석성적 산출방법**

- 학년별 미인정에 의한 결석, 지각, 조퇴 결과를 반영하며 지각, 조퇴,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함(소수점 이하 버림)

2) 1998년 2월 ~ 2007년 2월 졸업자

◦ **교과성적 산출방법**

- 과목별 성적성취도(평어)에 따른 과목별 평어점수를 산출함  
(평어 : 수 5점, 우 4점, 미 3점, 양 2점, 가 1점)
- 산출된 과목별 평어점수를 과목별 이수단위를 곱하여 과목별 가중점수를 산출함
- 산출된 과목별 가중점수를 학기별로 합산하고 학기별 이수단위의 합으로 나누어 학기별 평어환산평균을 산출함
- 산출된 학기별 평어환산점수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준표에 대입하여 학기별 반영점수를 산출함
- 산출된 학기별 반영점수를 학년별 반영비율 1/2로 곱하여 학기별 교과점수를 산출함
- 산출된 학기별 교과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교과성적 총점을 산출함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)

◦ **출석성적 산출방법**

- 학년별 미인정에 의한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를 반영하며 지각, 조퇴,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함(소수점 이하 버림)

3) 1997년 이전 졸업자

◦ **교과성적 산출방법**

- 학기별 계열석차 백분율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준표에 대입하여 학기별 반영점수를 산출함
- 산출된 학기별 반영 점수를 학년별 반영비율 1/2로 곱하여 학기별 교과점수를 산출함
- 산출된 학기별 교과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교과성적 총점을 산출함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)
- 종전생활기록부로 계열석차(학년석차)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최저등급(점수) 부여

◦ 출석성적 산출방법

- 학년별 미인정에 의한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를 반영하며 지각, 조퇴,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함(소수점 이하 버림)

4) 검정고시 출신자

◦ 교과목 반영방법

-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의 취득평균점수를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

◦ 교과성적 산출방법

- 백분율 :  $(100 - \text{취득평균점수}) \times 2.5$
- 석차 등급 : 상기 백분율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준표에 의거 환산

◦ 출석성적 산출방법

- 검정고시 성적에서 취득한 석차 등급을 출석성적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

5) 외국 교육과정 일부 이수자 등 일부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

구분	1학년 성적 없음	2학년 성적 없음	3학년 성적 없음	2개 학년 성적 없음
반영비율	2학년 50% 3학년 50%	1학년 40% 3학년 60%	1학년 40% 2학년 60%	1개학년 100%

※ 최소 2개 학기 이상의 성적이 기재돼 있어야 하며, 한 학기만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 학년의 성적은 그 한 학기의 성적을 당해 학년 성적으로 산출함

6)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, 교과교육 소년원 고교과정 이수자

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출석 성적 기준표의 9등급 및 석차 백분율 98.5% 반영

마.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준표

석차등급		평어환산평균	석차백분율	반영점수		비고
2028년 졸업자	2008년~2027년 졸업자	1998년~2007년 졸업자	1997년 이전 졸업자, 검정고시 출신자	수시모집	정시모집	
1등급	1등급, 2등급	4.50 ~ 5.00	0.00 ~ 10.00	900	405	
2등급	3등급, 4등급	3.29 ~ 4.49	10.01 ~ 34.00	859.5	384.75	
3등급	5등급	2.27 ~ 3.28	34.01 ~ 66.00	819	364.5	
4등급	6등급, 7등급	1.06 ~ 2.26	66.01 ~ 90.00	778.5	344.25	
5등급	8등급, 9등급	1.00 ~ 1.05	90.01 ~ 100.00	738	324	

**바. 학교생활기록부 출석성적 기준표**

등급	결석일수		반영점수		비고
	2개 학년	3개 학년	수시모집	정시모집	
1	0 - 5	0 - 7	100	45	
2	6 - 11	8 - 15	93.25	41.625	
3	12 - 14	16 - 19	91	40.5	
4	15 - 20	20 - 27	88.75	39.375	
5	21일 이상	28일 이상	82	36	

**4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**

모든 전형에 대해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1항에 따라 “학교폭력 사실”이 확인될 경우 총점(1,000점)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감점 처리 함.

구분	조치사항	감점
1호	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	1점
2호	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	
3호	학교에서의 봉사	
4호	사회봉사	3점
5호	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	
6호	출석정지	5점
7호	학급교체	
8호	전학	15점
9호	퇴학	

## 5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

### 가. 영역별 반영비율

모집단위	수능성적 활용지표	반영 영역수	수능 영역별 반영비율(100%)				비고
			국어	수학	영어	탐구영역 (사회,과학,직업)	
전체학과	백분위	4	30%	30%	30%	10%	

- ※ 국어, 수학, 탐구영역은 백분위, 영어 영역은 등급 성적을 백분위로 환산함
- ※ 탐구영역은 학생이 응시한 과목 중 백분위가 가장 높은 1개의 과목을 반영함
- ※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8학년도 성적을 반영함

### 나. 영어영역 등급별 성적 기준표

등급	백분위 환산 점수	등급	백분위 환산 점수
1	100	6	55
2	93	7	45
3	88	8	35
4	75	9	25
5	65		

### 다. 가산점 적용방법

수능영역	등급	1	2 ~ 3	4 ~ 5	6 ~ 7	8 ~ 9
한국사	가산점	5점	4점	3점	2점	1점

## VI 순수외국인 전형

###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

계열	모집단위	전공	모집인원	비고				
인문사회	경찰학부	경찰행정학전공 경호학전공	모집단위별 약 간 명					
	복지상담학부	상담복지학전공 언어치료학전공 아동학전공 한국어학전공						
	융합경영학부	호텔관광경영학전공 항공경영학전공 창업경영학전공						
공학	안전공학부	소방방재학전공 정보보안공학전공			모집단위별 약 간 명			
	건설공학부	건축학전공 토목공학전공						
	에너지기계공학부	전기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전공						
예·체능	체육학부	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재활학전공 태권도학전공					모집단위별 약 간 명	
	예술학부	공연예술학전공 뷰티케어학전공						

※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
### 2 지원 자격

가.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모 모두 외  
국인인 외국인

### 3 전형 방법

모집단위	반영비율(배점)		합 계
	서류전형	면접전형	
전 모집단위	50%(50점)	50%(50점)	100%(100점)
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1항에 따라 “학교폭력 사실”이 확인될 경우 총점(100점)에서 감점 처리 함.

- 1호, 2호, 3호 : 1점
- 4호, 5호 : 3점
- 6호, 7호 : 5점
- 8호, 9호 : 15점

### 4 제출 서류

번호	제출서류	비 고
1	입학원서(사진부착)	
2	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	
3	고등학교 졸업(재학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	공증 및 영사확인
4	학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	
5	가족관계증명서	공증 및 영사확인
6	유학경비 부담 서약서	
7	개인정보수집 · 이용 동의서	
8	언어능력 입증서류 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	
10	번역자 확인서	

※ 위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음



**제주국제대학교**  
Jeju International University

<http://www.jeu.ac.kr>

입학팀

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(영평동)

TEL. 064) 754-0226 FAX. 064) 702-0268